

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공모

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
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□ 공모직위: 상임감사

□ 임 기: 2년(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)

□ 자격요건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
-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제18조제3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
- 감사로서의 전문성, 역량, 공직윤리 의식을 갖추신 분
-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신 분

□ 제출서류

-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,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. (첨부된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참조)
- 최종학력증명서(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포함), 경력증명서, 기타 증빙자료 각 1부.

□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: 2022. 10. 13. ~ 10. 26. 18:00
- 접수방법: 방문, 등기우편, 전자메일(lx0202@lx.or.kr)
 - 방문접수: 대리접수 가능,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
 - 전자메일: 각 서류의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일체의 서류를 1개의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첨부 제출, 원본은 면접 당일 제출
 - 등기우편과 전자메일은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.

- 접수장소: (54870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(중동)
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추천위원회(5층 인사처)

□ 심사방법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
 - 서류심사: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
 - 면접심사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

□ 기타사항

- 지원서 내용 오류 및 허위 기재, 허위자료 제출,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.
-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 063-713-1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13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추천위원회

[붙임]

상임감사 자격요건 관련 규정 안내

○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(결격사유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제33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, 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,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 제18조제3항(임원의 구성 및 임명 등)

직 위	구분	자 격 기 준
감사	포괄적 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○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○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○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
	필수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
	경력 요건	<p>가.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·수사·법무, 예산·회계, 조사·기획·평가 등의 업무(이하 “감사 관련 업무”라 한다)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다. 공공기관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사람으로서 앞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라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사람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</p> <p>마.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○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「정당법」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

* 경력요건은 상기 각 호(가~마)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 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.